

의안번호	2206551
의 퇴 인	김위상의원
회 답 일	2025.2.17..
추계번호	24B596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4조의3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대상에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하여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대상 확대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보수에 관한 사업비 증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동법 제4조의3¹⁾에 따라 환경부는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또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공공수역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210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해 지반 침하 개연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표 1 참고)

[표 1] 하수관로 정비 사업 주요 내용 및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2025 예산
하수관로 정비	도시침수 대응	하수범람으로 인한 침수(우려)지역에 하수도 인프라 확충	313,757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정비	1,295,067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지반 침하 개연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지원	2,594
	대심도하수저류시설 설치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하수관 정비 및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심도하수저류시설을 설치	15,000
합 계			1,626,418

- 개정안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대상이 확대되어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업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추가로 지정되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수 및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노후화 정도 등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이 곤란하여 추계가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